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268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3. 3. 접수 17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계선

[별지목록]

- 1.[토지]경기도 파주시 C 임야 4500㎡
- 2.[토지]경기도 파주시 D 임야 588㎡
- 3.[토지]경기도 파주시 E 임야 52㎡
- 4.[토지]경기도 파주시 F 도로 698㎡ B 지분 698분의 115 전부
- 5.[토지]경기도 파주시 G 임야 15663㎡
- 6.[토지]경기도 파주시 H 전 1609㎡ B 지분 2분의 1 전부
- 7.[토지]경기도 파주시 I 전 1610㎡ B 지분 2분의 1 전부
갈.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채납자 B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나. 피고는 B의 배우자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피고는 2020. 2. 20.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합니다.)을 이전받은 수탁자이자 같은 신탁계약에 따른 제 1 수익자입니다(신탁원부)

2. 파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파세 경위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B가 2019. 11. 19. 양도한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8,511,5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현재까지 이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채납액이 있으며, 증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표1. B의 피보전채권인 국세채납액>

(단위: 원)

관할	세목	납부기한	채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금천	양도소득세	2021. 3. 19.	351,450,420	2019년	2019.11.30.
채납액 합계			351,450,420원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탁계약의 체결일은 2020. 2. 20.이지만 그 전인 2019. 11. 30.에 원고의 B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가. 신탁계약

B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20.2.20.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으며 피고를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6호증 신탁원부(K 을)).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보면, 제1조 신탁의 목적으로 “제 1 수익자 A를 위하여서는 신탁재산의 처분할 시 그 수익금을 우선 교부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동산 처분 시 피고시 매매대금을 피고가 수령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

산들에 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①별지목록 기재 1~5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3.11.27. L 은행이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고 ②별지목록 기재 6~7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4.2. M 조합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시점에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 당시의 평가액은 아래 <표2> 토지의 합계액 1,798,457,000원에서 L 은행의 채무 825,000,000원과 M 조합의 채무 148,074,000원¹⁾을 차감한 825,383,000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당시의 B의 채무초과 상태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계산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825,383,000원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 채권최고액은 390,000,000원이나 해당물건의 평가액(표2 참조)을 한도로 차감함

<표 2> 사해행위(2020. 2. 20.)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경기도 파주시 C	1,243,145,000	이 사건 부동산 2019. 9. 18. 기준 감정가액 갑 제7호증의1 한국법원경제 정보
	경기도 파주시 D		
	경기도 파주시 E		
	경기도 파주시 F		
	토지 경기도 파주시 G	407,238,000	이 사건 부동산 2019. 9. 18. 기준 감정가액 갑 제7호증의2 한국법원경제 정보
	경기도 파주시 1/2지분 H	74,014,000	이 사건 부동산 92,000원×1609㎡×2분의 1 갑 제7호증의3 개별공시지가
	경기도 파주시 1/2지분 I	74,060,000	이 사건 부동산 92,000원×1610㎡×2분의 1 갑 제7호증의4 개별공시지가
	토지 및 건물 서울 관악구 N 외 1	0	2019. 11. 6. 차내 에 게 신탁하면서 우선주익자 로 지정하였기에 적극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갑 제7호증의5 신탁원부() 등)
	L 은행	32	갑 제7호증의6 금융거래조 화내역
	O 은행	1,865,300	
	P 은행	10,145	
	Q 은행	29,541	
	R	33,979	
	S	6,502	
	소계	1,800,402,499	
소극재산	국세 임도소득세(기한후 신고세액)	376,260,834	갑 제3호증
	근저당 근저당부채(별지목록 1~5번 부동산)	825,000,000	2013.11.27 설정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 증명
	근저당 근저당권부채(별지목록 6~7번 부동산)	390,000,000	2014.4.2 설정 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 증명
	소계	1,591,260,834	
합 계		209,141,665	

다. B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B는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부동산을 매매가 1,920,000,000원으로 양도하였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 부채 및 보증금 등의 채무를 제외하면 119,239,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B의 자녀인 T이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사례 행위 당시의 직극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갑 제2호증 가록 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매수인답변서(J 등)).

라. 소결

B는 본인에게 과세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채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신탁하면서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음이 분명합니다.

4. 사례의 의사

B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며,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례행

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반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20. 2. 20. 이므로 본 소의 제기는 사해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서울지방법국세청 제남전담부서에서 신탁원부 등을 발급한 2021. 9. 13. 이후입니다.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신탁원부 (K 8)).

7. 원상회복(원물반환)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신탁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와 피고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1번부터 4번까지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이 완료되었고, 매각되지 않은 별지목록 기재 6번과 7번 부동산에는 2021. 9. 28.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합니다. 한편 별지목록 기재 5번 부동산의 경우 [L]은행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L]은행의

2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전액 배당 받았기에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갑 제9호증 배당표(U), 갑 제10호증 L 은행 회신공문).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5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